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훈계대상자 ① 충청남도 공주시 ○○○○과 지방○○○○○ ○○○

②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행정과 지방○○○○○ ○○○
(전 부여군 ○○○○과)

③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건축과 지방○○○○ ○○○
(전 부여군 ○○○○과)

내 용

지방○○○○○ ○○○은 2017. 4. 26.부터 2018. 1. 9.까지 공주시 ○○○○과에서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계약” 5회차(2017. 10. 25.~2021. 10. 24.)와 “공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약” 5회차(2013. 3. 16~2018. 3. 15.) 수의계약 추진 실무담당자로, 지방○○○○○ ○○○은 2014. 8. 25.부터 2015. 7. 30.까지, 지방○○○○○ ○○○은 2016. 7. 31.부터 2017. 12. 31.까지 부여군 ○○○○과에서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운영계약” 4회차(2015. 1. 1.~2016. 12. 31.)와 5회차(2017. 1. 1.~2018. 12. 31.) 수의계약 추진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대상시설에서 환경기초시설·청사관리 등과 같이 시설관리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대상이 아닌 아웃소싱(용역)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다.

1.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약 부적정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주시장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를 위하여 그 운영관리 업무를 공주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가.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 부적정

공주시 ○○○○과는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⁵⁾(50톤/일)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준공 후 2001. 5. 13.부터 2006. 6. 30.까지 ○○○○○(주)에서 운영·관리하였으며, 2006. 7. 1. ○○○○(주)로 운영·관리권이 이관되어 2011. 5. 13.까지 ○○○○(주)에서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관리하였고, 이후 운영·관리기간이 종료된 2011. 5. 14.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주)와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다.

공주시 ○○○○과는 2017. 7. 28.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기간 연장 추진계획” 내부보고(시장결재)를 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를 근거로 ○○○○(주)와 2017. 5. 14. ~ 2020. 5. 13.까지 3년간 연장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방침을 받은 후 2017. 10. 25.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관련 위탁비용 등 결정보고” 내부보고(○○○○국장)에서 ○○○○(주)와

5)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1999. 9. 1.부터 2000. 12. 1.까지 총사업비 88억 원을 들여 준공하였으며, 시설용량은 소각시설 50톤/일임

2017. 10. 25. ~ 2021. 10. 24.까지 4년간 연장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소각시설 운영 계약 현황

구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수의계약 사유
최초	2001. 5. 13~ 2006. 6. 30.	2,772,000	○○○○○○(주)	BT0	「사회기반시설에 의한 민간투자법」제26조(사회기반 시설의 관리운영권)
2회	2006. 7. 1~ 2011. 5. 13.	1,468,000	○○○○(주)	BT0	
3회	2011. 5. 14~ 2014. 5. 13.	1,504,400	○○○○(주)	수의계약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제5조 (위·수탁기간)
4회	2014. 5. 14~ 2017. 10. 24.	1,834,180	○○○○(주)	수의계약	
5회	2017. 10. 25~ 2021. 10. 24.	2,296,220	○○○○(주)	수의계약	

※ 공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공주시 ○○○○과는 위 소각시설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기간 연장 추진계획 보고 시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6)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5조제3항7)과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 제3조제1항8)을 수의계약 근거 법령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

-
- 6)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7)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8) 제3조(민간위탁) :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그 운영관리업무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사유와 폐기물시설축진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기준을 명시한 것은 동 자격을 갖춘 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⁹⁾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 대한 의미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참조)

따라서 수의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는 지방계약법에 위배 된다.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아목에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도 지방자치단체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그 기관의 명칭이 명시된 기관만을 말한다고 할 것임. 한편, 법령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은 해당 위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수탁자의 최소한 업무처리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그와 같은 규정을 뒀다는 것만으로는 경쟁에 의한 계약 체결이 부적절, 불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란 다른 법령에서 기관을 명시하여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법제처 법령해석 07-0044 참조), 다른 법령에서 위탁받을 자의 자격기준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기준에 맞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

그러므로 공주시 ○○○○과는 위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을 계약이 만료 될 때마다 지방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특정업체와 수의(연장)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지방○○○○○ ○○○은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주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계약” 5회차(2017. 10. 25.~2021. 10. 24.) 수의계약을 추진한 실무책임이 있다.

나.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 부적정

공주시 ○○○○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250톤/일)¹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00. 11. 13.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을 포함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공개모집(입찰공고) 및 낙찰자를 선정하여 2001. 3. 16. (주)○○○○○○○○○○사무소와 계약기간 2001. 3. 16.부터 2004. 3. 15.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최초 계약 만료 후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합동감시 시까지 (주)○○○○○○○○○○사무소와 총 4회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표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계약 현황

10) 공사기간 : 1995. 6. 16.부터 2001. 2. 28.까지, 총사업비 140억 원

구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수의계약 사유
최초	2001.3.16. ~ 2004.3.15.	593,780	(주)○○○○ ○○	일반입찰	해당없음
2회	2004.3.16. ~ 2007.3.15.	1,549,300	"	수의계약 (재계약)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제4조 (위·수탁기간)
3회	2007.3.16. ~ 2010.3.15.	1,613,762	"	"	
4회	2010.3.16. ~ 2013.3.15.	1,721,739	"	"	
5회	2013.3.16. ~ 2018.3.15.	1,993,077	"	"	

※ 공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¹¹⁾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으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웃소싱(용역)에 해당되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제4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의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는 지방계약법에 위배 된다.

그러므로 공주시 ○○○○과는 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 될 때마다 지방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1)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 단순관리 대행계약(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지방○○○○○ ○○○은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주시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약” 5회차(2013. 3. 16.~2018. 3. 15.) 수의계약을 추진한 실무책임이 있다.

2. 부여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약 부적정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부여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 등록·신고를 필한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기간 5년 이내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의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이 동 업무를 수탁받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익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부여군 ○○○○과는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10톤/일)’¹²⁾을 준공 후 ○○○○(주)와 2013. 3. 1.부터 2014. 12. 31.까지 수익계약으로 민간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18.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 용역” 계약을 위한 기본방침(입찰, 수익계약 등)을 결정하고자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용역 계약 방침결정” 내부보고(군수결재)를 하였다.

위 내부보고에서 경쟁입찰 시 과다경쟁으로 신규업체 난립 예상, 업체변경에 따른 고용불안과 전문성 약화 우려, 우수업체 탈락 가능성, 부적격 업체 낙찰로 부실화 우려 등의 사유로 경쟁입찰을 배제하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¹³⁾를 근거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시공한 ○○○○(주)와 수익계약(재위탁)을 체결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부여군 ○○○○과는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계약”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아래 [표3]과 같이 연장계약(수익계약)을

12) 공사기간 : 2008. 09. 01.부터 2013. 07. 31.까지, 총사업비 : 40억원

13)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제3항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체결하였다.

[표3]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계약 현황

구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수의계약 사유
최초	2013. 03. 01~ 2013.07.31	286,000	○○○○(주)	수의계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
2회	2013. 08. 01~ 2014. 12. 31.	289,970	○○○○(주)	수의계약	
3회	2014. 01. 01~ 2014. 12. 31.	763,039	○○○○(주)	수의계약	
4회	2015. 01. 01~ 2016. 12. 31.	1,516,100	○○○○(주)	수의계약	
5회	2017. 01. 01~ 2018. 12. 31.	1,735,130	○○○○(주)	수의계약	

※ 부여군 제출자료 재구성

부여군 ○○○○과는 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운영계약 및 연장 계약 내부 결재보고에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를 수의계약 근거 법령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사유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기준을 명시한 것은 동 자격을 갖춘 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

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위배 된다.

그러므로 부여군 ○○○○과는 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계약을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특정업체와 수의(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지방○○○○○ ○○○와 지방○○○○○ ○○○은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운영계약” 4회차(2015. 1. 1.~2016. 12. 31.)와 5회차(2017. 1. 1.~2018. 12. 31.) 수의계약을 추진한 실무책임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공주시장, 부여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지방계약법」 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는 절차에 따라 정비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013.2, 환경부)」에 따라 관내 다른 환경기초시설들도 함께 통합위탁 관리하는

것은 인력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가능하므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을 추진하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